

##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(제3조제1항 관련)

구분	신고사항
1. 공통	<p>가.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        나. 계약 체결일,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        다. 거래대상 부동산등(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)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          라.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(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)          마. 실제 거래가격          바.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        사.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·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             1)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             2) 개업공인중개사가 「공인중개사법」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·전화번호 및 소재지</p>
2.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	<p>가. 법인의 현황에 관한 다음의 사항(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계약이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         1) 법인의 등기 현황          2)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        가)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: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            나)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: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</p> <p>나. 주택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(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만 해당한다)          1) 거래대상인 주택의 취득목적          2)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.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          3) 임대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</p>
3.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(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	<p>가.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.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</p> <p>나.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,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</p>

## 비고

1. 「개업공인중개사」란 「공인중개사법」 제2조제4호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.

2. 「법인」이란 「부동산등기법」 제49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법인으로 「상법」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.

3. 「주택」이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(공관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)을 말하며,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포함한다.

4. 「국가등」이란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국가등을 말한다.

5. 「친족관계」란 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가목의 친족관계를 말한다.

6. 「투기과열지구」란 「주택법」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.

7. 「조정대상지역」이란 「주택법」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.